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영장주의 도입〉

■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79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 개관	3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영장주의 도입	6
3.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통지 유예에 영장주의 도입 등	20
4.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청구	29
5.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관련 범정형 상향	3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성윤 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4. 9. 25.
3. 회 부 일 : 2024.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등한 수준에서의 보호가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이용자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요청기관의 내부결재만으로 그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제공 사실의 통지도 장기간 유예할 수 있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51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 제도 남용의 위험 등을 지적한바 있으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2015년, 2023년 통신

이용자정보제공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바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통신사실자료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가입자정보 및 통신사실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안전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 개관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¹⁾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 ⑥ 가입일 또는 해지일과 같이 전기통신 가입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을 말함.

이와 달리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²⁾는 ① 가입자의

1)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2)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일시, ②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③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④ 사용도수, ⑤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⑥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⑦ 정보통신기기 접속지의 추적자료와 같이 전기통신 사용자가 언제, 어떤 전기통신과 어떤 기지국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들임.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비교>

구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법적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제공범위	이용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해지일)	이용자의 통신사실 자료 (통신 일시 및 개시·종료 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사용도수, 로그기록, 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정보통신기기 접속지 위치추적자료)
요청주체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
사전절차	—	○검사, 사법경찰관: 법원 허가 ○정보수사기관: 고법수석부장판사 허가
사후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현황 보고 ○가입자에게 통지(23.12.29.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현황 보고 ○가입자에게 통지
정보관리	—	○비밀준수 의무, 자료 사용 제한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통신비밀보호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과 달리,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시에는 별도의 사전 절차를 요하지 않음.

-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³⁾,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반기별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현황을 발표하고 있음.

<2022년 및 2023년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전화번호수	2,122,927	2,216,559	2,418,668	2,212,642
	문서수	482,566	513,008	570,810	548,792
통신사실확인자료	전화번호수	302,370	197,698	254,190	263,070
	문서수	95,801	106,897	153,049	145,22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4.06.14.)

3)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영장주의 도입

현행	개정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第2條(定義) ----- -----.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통신이용자정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이용자의 성명 나.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다. 이용자의 주소 라. 이용자의 전화번호 마.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사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바.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12. (생략)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法과 刑事訴訟法 또는 軍事法院法の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12. (현행과 같음)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① ----- ----- ----- ----- 및 통신사실확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간의 對話를 녹음 또는 聽取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당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第4條(不法檢閲에 의한 郵便物の 내용과 不法監聽에 의한 電氣通信內容의 증거사용 금지) 第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不法檢閲에 의하여 취득한 郵便物이나 그 내용 및 不法監聽에 의하여 知得 또는 採錄된 電氣通信의 내용은 裁判 또는 懲戒節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인자료 또는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이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4條(不法檢閲에 의한 郵便物の 내용과 不法監聽에 의한 電氣通信內容의 증거사용 금지) ----
--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사실이나 그 내용 및 불법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이나 그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등의 제공 절차)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
-----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통신사실확인자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

⑤-----
-----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의 제공을 ----- 통신사

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 (생략)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

실확인자료등의 제공요청사실
-----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요청서 -----
-----.

⑥-----
-----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

-----.

⑦-----

----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 제공한 때에는 -----

-----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등의 -----
----- 통신사실 확인자료등의 제공요청서등 --
----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 제공한 날부터 -----
--.

⑧ (현행과 같음)

⑨-----
-----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 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③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

----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
공-----.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등의 제공 절차 등) ①-----

----- 통신사실확
인자료등의 제공-----
--.

②-----

----- 통신사
실확인자료등의 제공 -----
-----.
-----통신사실확인
자료등의 제공 -----.

③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u>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u> 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 ----- ----- <u>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u>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u>통신사실확인자료</u> 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 <u>통신사실확인자료등</u> ----- ----- -----.
제15조의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u>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u>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3(시정명령) ----- ----- ----- <u>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u> ----- ----- ----- -----.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별도의 사전적 절차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검사, 사법경찰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집이 필요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13조 등).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현행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음.

- ㉠ 불법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이용자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안 제4조)
- ㉡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 요청이 가능한 상황과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3조제1항)
-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영장주의 도입(안 제13조제3항·제4항)
- ㉣ 수사기관 및 법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관련 자료 비치 의무(안 제13조제5항·제6항)
- ㉤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 1년⁴⁾에서 7년으로 상향(안 제13조제7항)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통신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등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 영장주의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도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니라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포섭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거친 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을 찬성하는 의견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포괄적이고,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만능키라고 불릴 정도로 단순히 개인을 식별하는 수준을 넘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다른 민감한 정보로의 연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 있음⁵⁾.

이용자정보 제공 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26(병합), 2022헌마105, 11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중 이종석 재판관 별개의견

- 국가인권위원회장은 2024년 8월 23일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해당 정보의 요청 요건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동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함⁶⁾.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는 수사목적의 가입자정보 제공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⁷⁾.
- 포털사업자 네이버는 영장주의 위배 우려를 고려하여 현재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홈페이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4년 상반기 수사기관으로부터 10건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받았지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각각 21건, 8건의 요청을 받았으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통신자료를 제출하고 있음⁸⁾.

6)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절차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4.8.23.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0486&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7) UNH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의 네 번째 정기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 2025.12.3.

8) 전자신문, “네이버, 영장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안 한다.” 2016.3.13. <https://www.etnews.com/20160313000098>

○ 반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보 및 반대의견**이 존재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취득 조항에 대해 범죄수사나 정보수집의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나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발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2022.7.21. 2016헌마388등)⁹⁾.

- **법무부**는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 등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유지를 위해 취득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초정보에 한정되어 있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에 법원의 허가를 요할 경우 수사가 지연되어 추가 범죄 피해 발생, 피의자 및 공범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헌법재판소¹⁰⁾ 및 대법원¹¹⁾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의 성격을 영

9) 다만,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자료의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아니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 점에 대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하여 통신이용자정보 당사자에게 사후통지를 하도록 2023년 12월 2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였음.

10)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달리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위헌확인 등(헌법재판소 2022.7.21.선고 2016헌마388결정)]

11) “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통신자료에 대

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대법원은 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어 법원의 인력이나 예산 충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자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¹²⁾하고 있으므로 통신이용자 정보가 필요한 기관을 추가할 필요성 및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사후통지는 서면·문자로 하거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¹³⁾ 간이한 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사후통지를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경찰청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공무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¹⁴⁾

하여는 법원의 허가나 법관의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서라는 서면요청에 의해 통신자료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 [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 12)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 13)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 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

- 14)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에 필요한 조사)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

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등 상대방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야 하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는데 이에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2023년 경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이 115만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수사 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해외 입법례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보면 통신자료(우리나라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서 독일·프랑스·일본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영장 또는 허가가 필요하고, 영국은 소관 부처별로 입법을 통해 폭넓게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법원의 행정명령장 또는 대배심 명령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음¹⁵⁾.

<주요국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입법례 >

국가	내용
미국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음 ○텔레마케팅 사기 수사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행정명령장 또는 대배심의 명령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통신자료 제공 가능
독일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구분하여 규정함 ○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일반적인 압수·수색 절차 필요
영국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구분하여 규정함

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5) 이성기,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2014.3.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각 기관들이 법령에 자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비교적 폭 넓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 가능
프랑스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음 ○범죄수사, 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영장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이 직접 통신사업자에게 지시
일본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구분하여 규정함 ○형사소송법상 사실조회규정으로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이 가능하나 영장주의가 미적용되는 통신자료의 범위가 좁음(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가입장소)

○ 한편, 동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통신비밀보호법」에 옮기려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법률안¹⁶⁾이 계류 중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임.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연관 법률간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자체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593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926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영장주의 적용 관련 법안 발의 현황>

연번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
1		2202675(황정아의원안)	「전기통신사업법」에 영장주의를 도입
2		2203256(박주민의원안)	「전기통신사업법」에 영장주의를 도입
3		2203368(윤종오의원안)	「전기통신사업법」에 영장주의를 도입
4	2203600(박균택의원안)	2203593(박균택의원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
5	2203917(권향엽의원안)	2203926(권향엽의원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
6		2203956(이기현의원안)	「전기통신사업법」에 영장주의를 도입
7	2204279(이성윤의원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

※ 법안 발의 현황은 2025년 1월 기준

3.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통지 유예에 영장주의 도입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u>제공요청기관</u>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u>서면으로</u>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의 통지) ① ----- ----- ----- ----- ---- <u>제공요청기관, 주요내용, 사용목적, 요청사유</u> ----- ----- <u>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u> -----. 1. ~ 3. (현행과 같음)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u>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u>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 <u>1.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u>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사실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요청 사유

4.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5.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에도 -----

-- 3개월의 범위에서 -----

---.

1. ~ 4. (현행과 같음)

5.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삭 제>

⑤ ----- 제3
항 -----

-----.

<삭 제>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의6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보호 또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때로부터 30

<u>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u>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u>일 이내에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 파기하여야 한다.</u> ⑦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6항에 따른 파기사실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을 통지받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⑧ ----- 제7항----- ----- <u>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u>----- ----- -----.
---	---

-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법 제13조의3제1항).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법 제13조의3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는 관할 지방검찰직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통지 유예 사유의 판단이 수사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유예기간의 상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의 의사에 따라 장기간 통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임.

- 개정안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등의 제공에 대한 통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현행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음.
- ①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사실 뿐만 아니라 주요 내용이나 요청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안 제13조의3제1항)
- ②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안 제13조의3제2항)
- ③ 수사기관이 해당 통지를 유예시 영장주의 도입(안 제13조의3제4항)
- ④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에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안 제13조의3제3항제5호).
- ⑤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안 제13조의3제3항 본문)
- ⑥ 당사자의 권리보호 또는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파기하도록 의무화(안 제13조의3제6항).
- ⑦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등을 파기한 경우 파기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안 제13조의3제7항).

- 현행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므로 정보주체로서는 그 사실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임.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원칙¹⁷⁾을 고려하면, 수사의 밀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용이 적절히 고지되어야 할 것임. 만약 수사기관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기한 없이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 수사의 필요성에 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과소하게 보호되는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사건(2012헌마191등)에서 검사의 기소중지결정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지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특히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 사법부 등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받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¹⁸⁾.

17)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된다.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으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를 비교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2018.6.2.8. 2012헌마191등]

18) “이 사건 통지조항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그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를 유예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간의 한도를 설정하여 통지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수사의 필요성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간에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통지 유예 사유(안 제13조의3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¹⁹⁾)를 불문하고 통지 유예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국가의 안전보장(제1호)이나 개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제2호)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등에서도 일률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통지를

제공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계속 진행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수사·내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는 그 기간이 아무리 길다 하여도 자신의 위치정보가 범죄수사에 활용되었거나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통지조항은 수사기관이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등에 대해 사후통지를 받더라도 자신의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어떠한 사유로 수사기관에게 제공되었는지 전혀 짐작할 수도 없다. 그 결과, 정보주체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조항은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의 통지와 관련해서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도 피의자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수사·내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수사·내사의 대상인 정보주체에 대해 이를 통지하도록 하되, 통지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부 등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어 그 통지를 유예하는 방법, ② 일정한 예외를 전제로 정보주체가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 사유의 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③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개선입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를 위한 적법절차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8.6.2.8. 2012헌마191등]

- 19) 안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유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한 취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975호)은 제3호·제4호 사유에 대해 통지 유예기간의 한도를 설정한 반면, 제1호·제2호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⁰⁾.

- 또한, 유사 입법례를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²¹⁾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거래정보제공의 통보를 유예하는 경우²²⁾에는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기본권 침해 정도가

2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975호)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통지유예는, 제1항제2호에 의한 통지의 경우 같은 호 본문의 각 결정을 한 날 또는 같은 호 단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4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에 의한 통지의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2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6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 없다.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1)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이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유예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체계적 정합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관 의견이 존재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법무부는 통신제한조치²³⁾나 금융거래정보제공의 경우 법원의 허가나 영장 없이 기관 내부 승인절차로 통지 유예가 가능하므로 오히려 권리침해 정도가 낮은 통신사실확인자료등에 법원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체계적 정합성에 어긋나고,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통지 유예 기간 상한을 설정하면 국가 안보,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안전 및 실체적 진실 발견 등 중요한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경찰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금융거래정보보다 권리 제한 정도가 낮은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통지 유예 시 법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통지 유예 기간을 한정할 경우 국가 안전보장, 사건관계인 보호, 범죄 수사 등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의견임.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23)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청구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3(당사자의 권리보호) ① 제9조의2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허가서를 발부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청구한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심사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자는 청구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 및 관련된 자료의 청취·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심사 청구에 필요한 범위에서 청취·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한다.</u> <u>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3조의6(당사자의 권리보호)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제12조의3을 준용한다.</u>

-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제한조치등”이라 함)의 정보주체가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통신제한조치등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2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6),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청취·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2조의3제2항), 법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한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2조의3제3항).

- 통신제한조치등에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적시된 영장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보관 기간이 도과하여도 자료를 파기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집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통제함으로써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조문의 표현상 해당 재판의 심사 대상은 “통신제한조치등의 집행을 적법성”인데, 통신제한조치등 자체의 적법성을 심사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통신제한조치등을 수행하는 수사기관의 구체적 직무집행 행위²⁴⁾의 적법성을 심사한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한 측면

24)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④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이 있음.

(1) 만약 통신제한조치등 자체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더 이상 통신 제한조치등나 자료의 보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법원이 통신제한조치등을 허가함으로써 적법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재차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어 중복적인 절차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2) 통신제한조치등을 수행하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통신제한조치등으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거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라면, 당해 형사소송 또는 국가배상소송 절차에서 판단하면 되므로 별도로 당사자의 권리보호 절차를 마련할 실익이 크지 않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관 의견이 존재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법무부는 실무상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기계적으로 집행하고 있어 위법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적법성 심사 청구 절차를 통해 당사자가 수사 관련 자료를 취득하게 되어 수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으며, 연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경찰청은 이미 적법성이 담보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당사자가 재차 적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면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해당하고, ‘집행의 적법성’은 추후 재판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다룰 수 있으므로 별도의 청구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5.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관련 법령형 상향

현행	개정안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사용제한에 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u>검열</u> 또는 <u>전기통신의 감청</u> 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생략) ② ~ ④ (생략)	제16조(벌칙) ①----- ----- ----- -----. 1. ----- ---- <u>검열·전기통신의 감청</u> 또는 <u>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u>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 비교할 때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관련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비밀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 법정형을 상향하고 있음. 징역형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상향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법한 방법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시 처벌 법정형 ‘5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상향²⁵⁾(안 제16조제1항제1호)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비밀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 법정형 상향(안 제13조의5, 제16조제2항제2호·제3항·제4항)

- 공무원²⁶⁾: 3년 이하 → 10년 이하
- 전기통신업무 종사자²⁷⁾: 5년 이하 → 7년 이하
- 일반인²⁸⁾: 3년 이하 → 5년 이하

○ 위법한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 및 관리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

-
- 25) 「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26)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7) 「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8)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함으로써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안 제16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도청·검열과 같은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것과 위법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 및 기본권 침해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벌의 체계적 정당성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65